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제98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군포시시설
관리공단 정관」 일부개정 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



2018년 12월 26일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12 호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

군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중 “산본로 267(금정동)”를 “군포로 339(부곡동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실장 김 광 찬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박 양 수 (390-7617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군포시 <u>산본로 267(금정동)</u>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</p>	<p>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----- -----<u>군포로 339(부곡동)</u> ----- -----.</p>